

革命期의 圖書館

—圖書館法과 圖協을 中心으로—

嚴

大

變

20世紀는 革命의 世紀이다. 世界는 보다 잘 살기 為한다는 革命의 鎮鑽爐속에 놓여 있다. 이땅에도 不正과 腐敗를一掃하고 새歷史를 創造한다는 標榜下에 5.16軍事革命이 果敢하게 進行되고 있으니 우리 圖書館界 또한 이世紀의in潮流에서 超然할수는 없는 것이다.

이때에 우리의 處 할바가 무엇인가? 僮觀者의 立場에서 남의 革命으로 둘릴것인가, 主體者의 立場에서 우리의 革命으로 이끌것인가, 選擇의 自由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이 革命을 이 땅의 圖書館發展과 飛躍의 機會로 善用해야 할것이다. 이것은 決코 政治的인 意味는 아니다. 圖書館은 어여한 政體下에서건 國民으로 하여금 內外 文化의 成果를 利用하여 民族文化의 發展에 創造的으로 參加할수 있는 資料를 提供할 義務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圖書館의 使命이기 때문이다.

무릇 個人이건 團體이건 간에 어떤 決定의in 制約와 沈滯에서 脫皮 하는데는 또한 決定의in 契期가 必要한 것이다. 革命이야 말로 舊穀에서 새로운 秩序로 飛躍의 새歷史를 創造할수 있는 絶好의 機會인 것이다.

이 땅의 圖書館界를 回顧하면 僮政植民地下의 裝飾의in 存在로부터 오늘날에 이

르기까지 온갖 制約과 沈滯속에서 荆棘의 길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그責任을 為政者의 無識이나 社會의 沒理解에 만들여서는 안될것이다. 아니 어떤意味에서는 그責任의 大部分이 우리自身들에게 있다고 아니할수 없다.

僮政時期에는 植民地의 鐵鎖를 벗어날수 없었다 치드라도 우리들의 世代부터 라도 解放과 戰亂의期間을 除外한 6.25後에는 圖書館을 보다 發展시킬수 있는 機會와 方法이 없었던것은 아니였지만, 우리들이 無力한 탓으로 그機會를捕捉하지 못하였고 그方法을 實行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自認아니 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때는 왔다. 機機會는 善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革命을 契期로 館界와 스스로를 再批判하고 過去를反省하여 客觀의in 自己位置를 把握함으로써 圖書館과 圖書館人の 올바른 社會의in 位置와 權威를 獲得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5.16後의 社會의in 變動期에 圖書館界는 어떻게 變했을까? 筆者の 寂問인 탓인지는 모르되 國立圖書館의豫算增加 및 藏書目錄發刊·最高會議圖書館의一般無料開放 및 藏書目錄發刊·仁川市立圖書館의增築擴張·그리고 大田市立과 坡州 및 華川郡立圖書館의 新設 等을 除外하고는 全體의in 面에서는 오히려 萎縮되고

있는것으로 안다.

여기에는 不可避한 原因이 있겠으나 모
든 社會體制가 劃期的으로 改編強化되는
때에 唯獨 圖書館分野만이 放置되고 있다
는 것은 革命課業에 逆行되는 現象으로서
慎重히 考慮되어야 할 重大한 問題라고
아니할 수 없다. 때를 놓쳐서는 아니된다.
우리들은 이때에 圖書館事業을 沈滯
시키고 있는 原因을 再究明하고 이를 除去
하는데 總力を 다함으로써 圖書館의 振
與과 革新을企圖해야 할것이다.

筆者는 이러한 見地에서 圖書館法과 圖
協을 中心으로 館界의 當面課題에 對하여
若干의 意見을 提言코자 하는바이다.

圖書館法에 對하여

法治國家는 法律로부터 始作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圖書館과 專門職이 있음에도 圖書館法이 없었다는 것이 圖書館事業이 不振한 根本原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圖書館法은 우리 館界의 宿願으로서 圖協이 創立以來 7年間 이의 立法推進에 힘을 기울려 왔던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이 長期의인 努力에도 不拘하고 舊政權下에서 圖書館法이 制定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當時의 立法與件이 利權과 政治的利用價值로 要約되는데 不幸히도 圖書館法은 그對象圈外에 屬하였고, 國會議員님네 政府高官님네 하는 분들의 大多數가 圖書館을 利用해보지 못한 為人들이었다는 事實만으로도 證明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5.16後의 情勢는 크게 變하였다. 最高會議企劃委員會의 文社, 法制兩委員會와 文教部에서 때를 같이하여法案審議에着手하였던 것이다.勿論 여기에는 革命後 圖協에서 最高議員을 비롯한 關係要路에 提出한 効果의in 建議의 影響이 컸

다고 보아야 할것이거니와 當局의 革命的
인 立法推進을 높히 評價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法案은 其間 致命의in 矛盾을 內包하고
있는 몇個條文을 調整하지 못한채 法制處에
오랜時日 保留되고 있던것이 文教部에
서 이를 全般的으로 再檢討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改正되어야 할 法案은 圖協
의 見解를 보다 誠意있게 參酌하여 調整
될것으로 믿거니와 다음의 問題點이 올바
로 是正되어야 할것이다.

- ① 書資格은 文教部長官이 管掌토록
하여야 한다. ② 綜合法으로서 國立圖書
館을 包含하는 境遇에는 名稱에 있어 『中
央』이라는 虛飾語句를 削除하고 現在대로
의 國立圖書館으로 하며, 館長은 一級公
務員으로 하고 專門職副館長을 둘것이며,
圖書館要員養成所 및 圖書選擇委員會 를
둔다. ③ 公共圖書館의 閱覽料는 받지
아니한다. 이問題에 있어서는 閱覽料收入이
財政上의 도움이 된다면야 가난한 우리네
處地에서 누구가 받기를 反對하리요만, 實
情은 國立圖書館이 40圓, 地方圖書館이 10
圓乃至 20圓이라는 財政上 何等의
도움이 될수없는 보잘것없는 料金을 徵收하느
라고 不美스러운 賣票口를 마련하여 人員
을 配置하고 있으니 이와같은 矛盾은 社
會一般에게 마치 公共圖書館이 收支事業
인양 잘못 認識케 하는것 外에는 百害無
益한 制度上의 懈習인 것이다. ④ 法公布
前의 既存 圖書館職에 對한 保護規定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法制定上에 있어서
의 一般通例이며 既存職을 保護하기 為해
서 보다도 그들의 實務經驗을 바탕 評價해
야 하기때문이다.

그리고 또하나의 問題는 本法도 重要하
거니와 本法에 뒤따라 制定되어야 할 施行

規則과 基準策定이 本法에 뜻지 않게 重要하다는 點이다. 우리들은 여기에 있어서서 도 當局과 賢明하게 協調함으로써 現實의 이미 效果의인 우리들의 法으로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圖書館法制定을 앞두고 우리들이 銘心해야 할 일은 法은 手段이자 決策 目的是 아니라는 것이며, 혼히들 法이 萬事를 解決하는 듯한 지나친 期待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法의 効用은 法을 手段으로 運用하는 创意와 努力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圖協에 對하여

圖協은 公益社團法人이다. 法人은 共同의 目的을 爲한 集團으로서 法律로 人格을 附與받고 있는 것이다. 現代社會에서 個個의 힘은 弱하다. 따라서 社會 모든 分野마다 集團이 構成되고 있는 것이다. 法人은 그 運營如何에 따라 때로는 衆愚의 矛盾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全體의in 面으로 볼 때에는 構成員의 綜合의 意思의 集約體로서 社會의으로 絶對한 比重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社團法人은 財物이 中心되는 財團法人과는 對照의으로 사람이 中心되는 集團이라 構成員의 人和와 協調가 基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萬若 그러하지 못할 慢遇에는 團體의 趣旨와 相反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社會의 現實에서는 그러한例가 許多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圖協에 있어서는 間或 些少한 物議야 있겠으나 어느 團體에 뜻지 않게 人和 協調에 成功할 것으로 믿는다. 이것은 圖協이 知性人의 集團이라는 것과 職業에서 오는 相互理解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期待되는 바이다.

圖協은 時局의으로 有利한 與件과 더불

어 1962年度를 期하여 事務局陣容을 一新强化하여 革命의인 再出發을 하게 되었다. 지난 7年間을 圖協의 發育期로 본다면 이제부터의 圖協은 活動期에 드리가게 되는 것이다. 事務局의 热意도 大端하거나 理事陣과 事務局에 對한 會員의 期待 또한 적지 않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檢討되어야 할 重要的한 일의 하나는 圖協機構上에 있어서의 事務局의 位置에 關한 問題이다.

俗된 例가 될지는 모르나, 團體를 하나의 國家로 보고 會長은 大統領, 事務局長을 內閣首班으로 假定한다면 團體形態를 ① 會長中心制로 하느냐 ② 事務局長中心制로 하느냐에 따라 團體運營에 根本의 差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勿論 定款上에 있어서는 어느 團體나 『會長은 會務를 統理하고 理事는 會務를 審議執行하며, 事務局長은 會長의 指揮를 받아 會의 事務를 處理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現實問題로는 営利團體와 같이 會長과 理事陣이 平素 實務를 執行할 수 있는 境遇에는 可能하나, 그렇지 못한 團體에서는 理事陣은 總會의 決定事項을 執行하는데 있어 그 執行方法을 審議決議하며, 會長은 決裁하되 事務의in 執行을 事務局에 一任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圖協은 形式的으로는 ①의 位置에 있었으나 實際의in 面으로는 ①도 ②도 아닌 不安한 位置에 놓여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物議가 이어 낫든 것이다. 앞날의 圖協은 能率의in 團體의 例에 따라 ②의 方法을 採擇하여 事務局長에게 常務理事를 兼하게 함으로써 能動의in 活動權을 주어야 할 것이다.

結 言

敘述한바 現在 우리 圖書館界에 있어서

緊要하다고 生覺되는 몇 가지 問題를 論議하고 提言하였거니와 歸着되는 곳은 사람의 問題이다. 革命이고 圖書館이고 圖協이고 간에 제자리에 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모든것이 한갓 形式的인 空念佛에 끄치게 될것이다.

우리의 圖書館은 더以上 似而非圖書館 人の 犠牲이 될수 없을 것이며 또한 容納되지도 않을 것이다. 어떠한 教育을 받고 어떠한 知識을 가졌다는 것이 問題될 때는 이미 지났다. 必要한 知識을 가지고 얼마나 自己職業에 忠實하느냐가 問題되어야 할때가 온것이다. 筆者는 여기에 있어서 이미 圖協月報에 發表된 바있는 張一世氏의 『圖書館人과 倫理』 그리고 李春熙氏의 『圖書館으로 돌아가야 한다—韓國現實에서 본 司書職의 任務』가 다시 한번 真摯하게 考慮되어야 할것으로 믿는바이다.

끝으로 添言코서 하는바는 圖書館이 世俗의으로 華麗하지 못한 職業이라는 데서 오는 것인지 또는 內向的인 性格者에게 魅力있는 職業인지 아니면 過去의 圖書館이 올데 칼데 없는 失業群像의 消日處였다는 데서은 隙風인지은 잘알지 못하나 지나치게 消極的인 風潮가 우리 圖書館界를 뛰덮고 있다는것 만은 事實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이와같은 弊風을 一掃하고 清新한 氣風을 振作시켜야 할것이며 이것이 바로 圖書館의 精神革命인 것이다.

圖書館은 決코 駁색한 우물이 아니다. 洋洋한 人智의 大海이다. 우리들 圖書館人은 바야흐로 움트고있는 새時代에 寄與할수있는 文化일꾼으로서의 自己革命을 完遂할것을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前 圖協事務局長)
(現慶州市立圖書館長)

原稿募集

本誌에 掲載할 原稿를 會員 여러분에게 널리 募集하오니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原稿 内容——

1. 圖書館學 및 事業에 關한 參考用 論文
2. 圖書館界의 뉴ース 人事 其他 資料
3. 其他

磨勘 每月15日 內로

—編輯室 白一